

#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55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6년 3월 4일

발의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6. 2. 9. 박철성 의원이 발의(찬성자 13명)하여 2026. 2. 12.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「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3444호), 2026. 2. 9. 김형재 의원 외 24명이 발의하여 2026. 2. 12.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「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3504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 2건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사유

-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증가하여 지하수위 변동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를 포함시켜 지하개발 과정에서의 지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,
-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흠막이 스마트 계측 관리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지하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 시,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서,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제2항)
- 나.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의3)

##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흙막이 계측관리”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,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오차나 설계,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,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10. “스마트 계측”이란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, 데이터 처리,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을 말한다.

제12조제2항 전단 중 “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”를 “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,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”로 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흙막이 스마트 계측관리)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“흙막이 계측관리”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, 설계 및 시공시에 발생하는 오차나 설계,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,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p>10. <u>“스마트 계측”이란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, 데이터 처리, 의사결정 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을 말한다.</u></p>
<p>제12조(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 제14조와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<u>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</u>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,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</u> -----. ----- -----.</p>

③~⑥ (생략)

<신설>

③~⑥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3(흙막이 스마트 계층관리)

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흙막이 계층관리를 스마트 계층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